

민주노총 3대 입법 과제 ②

근로기준법 11조 1,2,3항 삭제

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



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

목차

1.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

-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
-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

2. 악용되는 근로기준법

- 사업장 쪼개기
- 프리랜서 계약 강요

3. 근로기준법 11조 1,2,3항 삭제

- 근로기준법 독소조항 삭제
- 국민의 대다수가 원한다
- 헌법을 위배하는 근로기준법
-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



노동의 “가치는
1

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

”

비경제활동인구 증가

5인 미만 사업장 규모

전체 노동자의 25%가 합법적으로 차별받고 있다

종사자 규모	종사자 수
전체	18,252,711 (100%)
5인 미만	4,605,267 (25.2%)

출처: 2024 고용노동부

특수고용노동자 포함하면 780만명

높은 이직률과 산업다변화로 통계조차 어려운 실정



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



무제한
연장근로 가능



30일 전 통보 시
마음대로 해고



부당해고
구제신청 불가



몇달 몇년을 일해도
연차 휴가 없음



생리 휴가 X



직장내 괴롭힘
참아야 함



연장 · 야간 · 휴일
시급 평소와 같음



중대재해 당해도
사업주는 처벌 대상 아님

노동의 “가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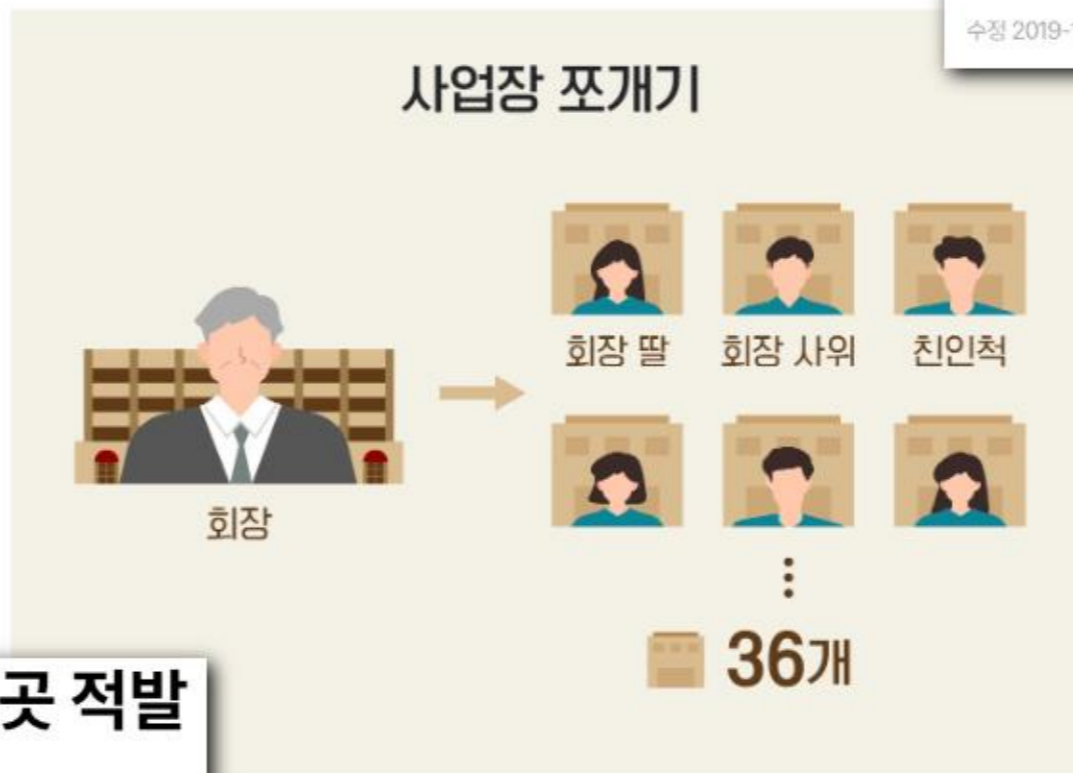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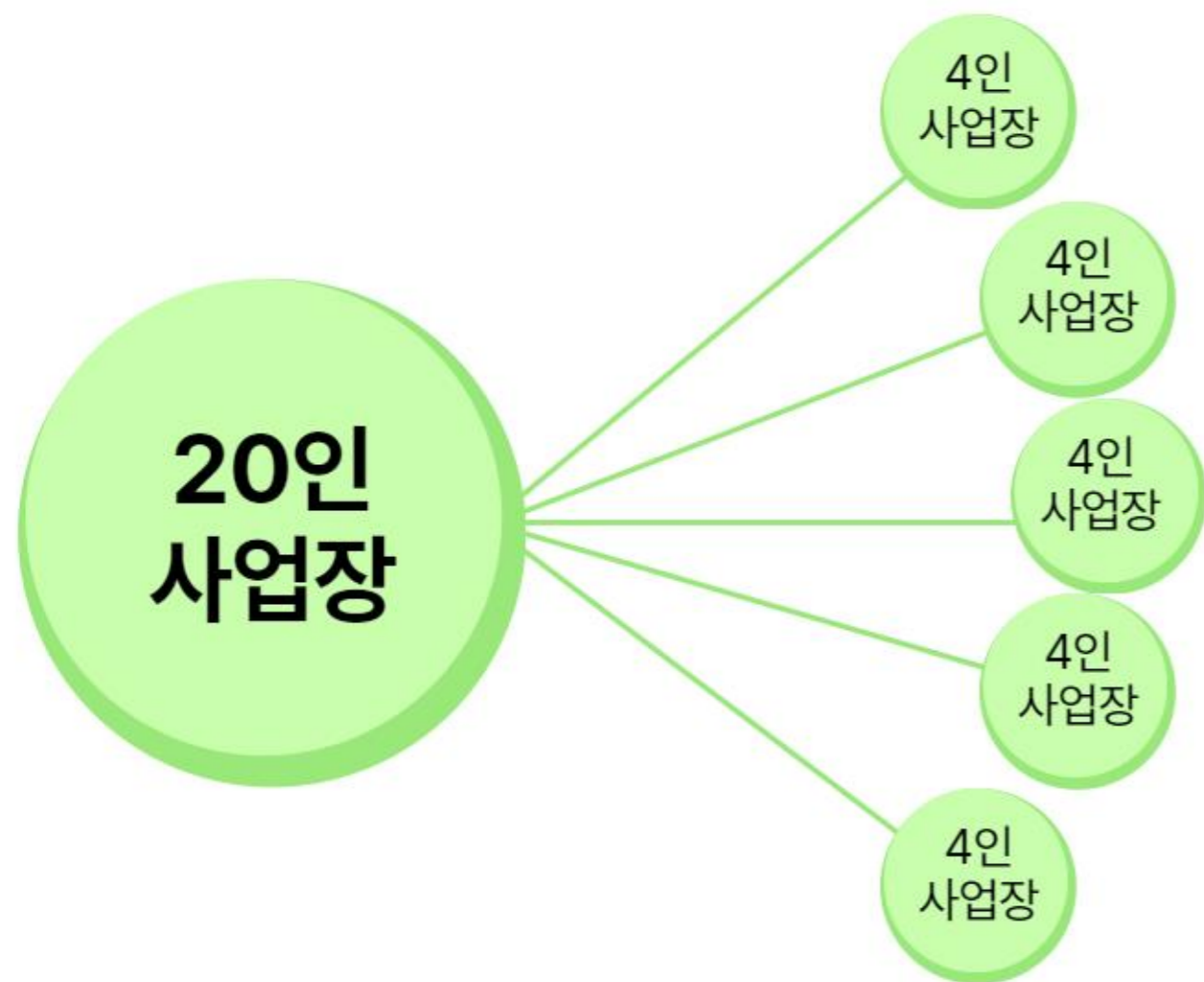
2

악용되는 근로기준법

”

비경제성까지 안는다

사업장 쪼개기 · 프리랜서 계약 강요



미용사·방송 스태프 등치는 가짜 '프리랜서 계약' 판친다

-직장갑질119 통해 본 부당사례-
근무 그대론데 근로계약 바꿔치기
장시간 근로에도 '노동법 인용 금지'
임금 불이익 특수고용노동자 양산

기자 권지담
수정 2019-11-27 21:37

식당·건설노동자도 '개인사업자'로 위장... '가짜 계약' 전 업종 만연

가짜 3.3%계약 실태조사 토론회

기자 김해정

수정 2024-07-09 22:08 등록 2024-07-09 20:44

회사 1개 36개로 쪼개고 '유령 직원'까지...이유는?

입력 2022.03.24 (18:09)

근로기준법 피하러 '사업장 쪼개기' 8곳 적발

송고시간 | 2022-03-23 17:27

법망 피하러 회사 쪼개기 '꼼수'... "5인미만 사업장도 노동법 적용해야"

이준성 기자 / 기사승인: 2021-11-24 17:06:03

**각종 세금혜택,
사업소득세 전가**

노동의 “가치는
3

근로기준법 11조 1,2,3항 삭제

”

비례항하지 않는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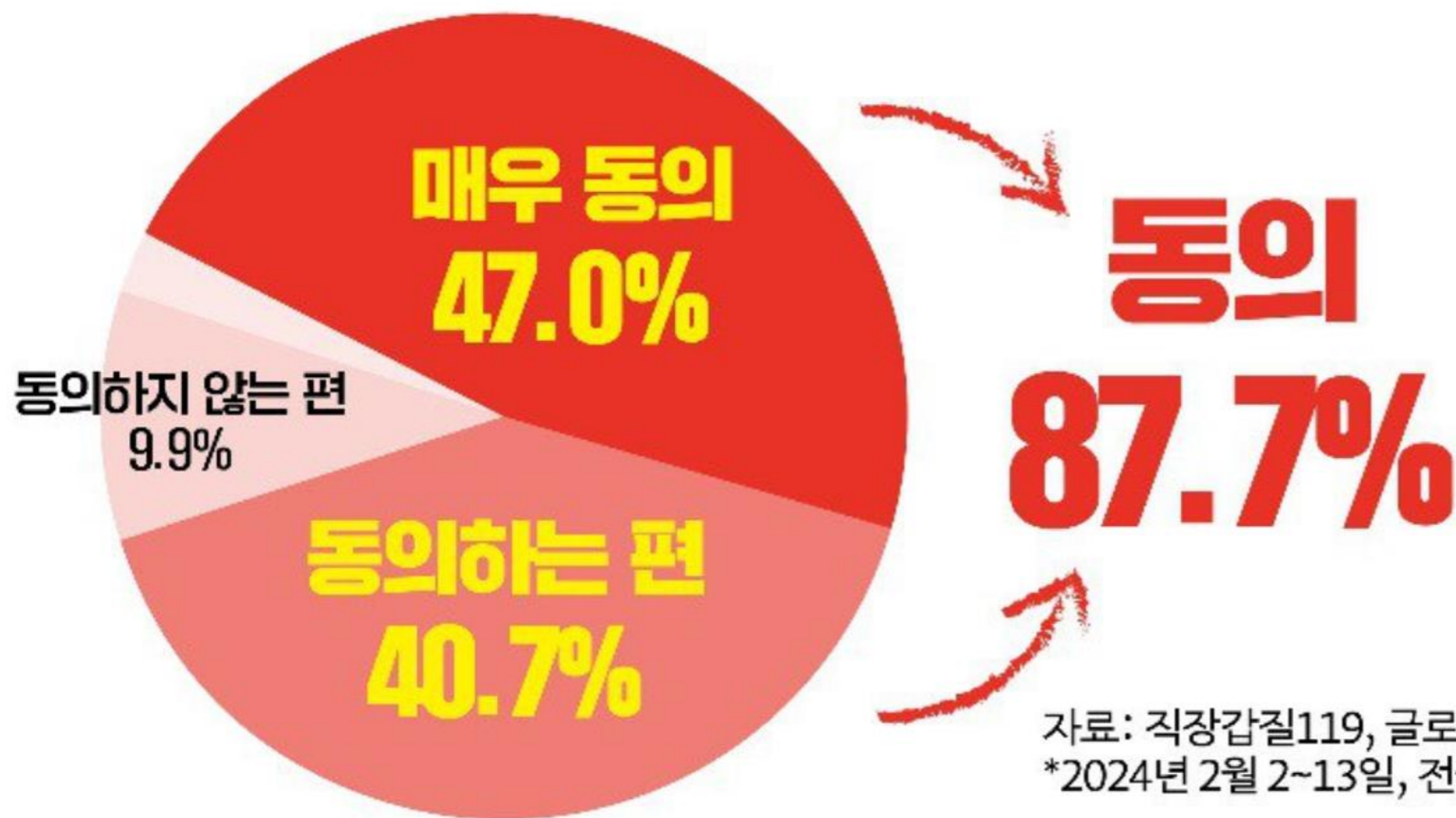
근로기준법 독소조항 삭제

-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-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근로기준법 11조 1,2,3항 삭제

국민의 대다수가 원한다

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,
국민의 8.7%가 동의



자료: 직장갑질119, 글로벌리서치

*2024년 2월 2~13일,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

헌법을 위배하는 근로기준법

헌법 32조 3항

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



근로기준법 11조

[적용범위]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

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달리 적용

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

54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
"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"



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지 70여 년이 지났다.
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울타리 밖의 존재인
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
모든 노동자와 함께 투쟁!
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!

노동의 가치는

이렇듯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

비경제적이지 않다